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그 근대화

-조선과 월남-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 | | |
|---------------------|--------------|
| I. 머리말 | III. 아편전쟁 이후 |
| II. 아편전쟁 이전 | 1. 조선 |
| 1. 책봉체제 | 2. 월남 |
| 2. 조선, 월남 양국과 청의 관계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아편전쟁(1840-1842)이후, 이른바 웨스턴 임팩트에 의해 근대적인 국제관계로 개편되었다. 19세기 초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체제 즉 조공관계였다. 이 체제는, 청을 중주국으로 하고, 조선, 유구, 暹羅(삼-태국), 蘇祿(스루), 南掌(라오스), 緬甸(버마), 越南(베트남) 등을 속국(번속국, 복속국, 조공국)으로 하는 것으로, 종속관계(宗屬關係)라고도 칭하였다.¹⁾

속국(조공국) 중에서 중추를 이룬 것은 조선, 월남, 유구의 3국이었다. 조선과 월남은 청나라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었으므로, 아편전쟁 이후, 청의 동향에 영향을 받았음에 반하여, 유구는 청과 바다에 의해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아편전쟁 이후의 청의 동향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조선과 월남이 청나라에만 복속한 것에 비하여, 유구는 청과 일본(사쓰마번-薩摩藩)에 2중으로 복속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월남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복속국인 조선과 월남 두 나라들 예로 들어서, 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책봉체제가 아편전쟁 이후에 이른바 웨스턴 임팩트에 의해 개편되는 과정을, 조

1)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大學出版會，東京 1973年 76-78, 87쪽. 冊封体制에 대해서는, 西嶋定生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岩波書店, 東京 2002年 5-58), 95-104쪽에 상세하다. 屬國에 대해서는, 《清史稿》屬國傳 등에記載되어 있다.

선과 월남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개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런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찰 대상은 조선에서 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이 가장 성했던 1884년 갑신정변까지로 한다.

조선과 월남을 둘러싼 국제상황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아편전쟁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II. 아편전쟁 이전

1. 책봉체제

책봉체제란,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국제질서로, 일반적으로는 조공관계라고도 일컬어진다. 조공관계는 종주국(a suzerain State)과 조공국(부용국 : a tributary State)으로 이루어지며, 종주국은 上國, 조공국은 속국 혹은 번속국이라고도 불렸다. 책봉체제에서는 종주국의 군주를 황제, 속국의 군주를 국왕이라고 각각 칭하였다. 황제는 종주국에만 존재하며, 속국 국왕의 상위에 군림하였다. 종주국과 속국은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속국간은 기본적으로 대등하여, 교린관계라 칭하였다. 따라서 책봉체제하의 국가 관계는 국가 평등론에 기초한 근대적 국가관계와는 달랐다.²⁾

청의 직접적 대외관계는 속국(조공국)과 互市諸國으로 구성되었다. 속국(조공국)은 예부와 理藩院이, 互市諸國은 예부가 각각 관할하였다. 《嘉慶會典(1818)》에 의하면, 예부가 관할한 속국으로 조선, 유구, 월남, 南掌(라오스), 暹羅(태국), 蘇祿(스루), 네덜란드, 버마, 포르투갈, 로마교황청, 영국 등이 있었으며, 理藩院 관할의 속국으로는 네팔, 러시아, 카사브한국, 코칸드한국 등이 있었다.

이러한 속국(조공국)이 베이징에서 입공할 때의 의례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입공의 빈도수, 입공의 루트, 조공사 일행의 인원수를 비롯하여, 예부에서의 表(속국 국왕의 상주문)의 전달, 공물의 전달, 황제의 알현, 그 외에도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³⁾

책봉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는 a) 책봉, b) 반력, c) 조공, d) 화이사상(증화사상)의 4가지였다.

- a) 책봉이란, 종주국의 황제가 조공국의 군주를 국왕에 봉하고, 인을 주는 것이었다.
- b) 반력이란, 종주국이 조공국에게 曆을 주어 사용케 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공국에게 <정삭(천자의 政令)을 받들게 하는> 것이었다.
- c) 조공은 종주국이 조공국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조공국의 조공사는 국왕으로부터 황제에게 보내는 표(상주문)와 공(공물)을 올렸다. 이 공에 대해서 황제의 답례가 주어졌다(조공회사). 한편 종주국 황제는 조공국의 국왕에게 칙사를 파견하였다.
- d) 화이사상(증화사상)이란, 원래는 한족 자존 사상으로, 한족만을 문명화된 華人이라 하고, 자기 이외에는 야만한 이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으로, 요컨대 스스로가 세계의 최고이며 중

2) 注1)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76-83쪽.

3) 위 책, 86-93쪽.

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원래는 한인의 사상이었으나, 중국대륙을 지배한 역대 국가는 비한인 국가를 포함하여 모두 이 사상(중화사상)에 의거하여, 중국을 자처하였다.⁴⁾ 만주인(여진족)의 왕조인 청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중국이라고 칭하였다.

책봉체제(조공관계)에는 주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두 가지가 있었다. 정치적 기능으로는, 종주국인 중국으로서는 속국을 자국 주위에 배치하여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속국으로서는 책봉체제에 참가함으로써 주위의 나라나 국내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안전보장의 관점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책봉체제의 정치적 기능은, 종주국이나 조공국이나 자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 하겠다.

책봉체제(조공관계)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우선 조공무역을 들 수 있으며, 이 이외에 종주국(중국)과 속국(조공국)과 사이에 국경무역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⁵⁾

2. 조선, 월남 양국과 청의 관계

1) 조선과 청의 관계

조선과 청의 관계는 1627년 정묘호란부터 시작된다. 1626년, 혼타이지가 후금 제2대 한으로 즉위하자, 남방에 있는 조선을 공격하였다. 이는 전대 누르하치가 명나라와 단교한 이래, 명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이 끊어져 식량난과 경제적 곤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국왕 인조는 한성에서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결국 굴복하여 후금국의 환을 형으로 하고, 조선국왕을 제로 하는 형제동맹을 맺었다.⁶⁾

그 후, 후금은 조선에 요구하여, 국경부근인 의주와 회령, 경원 3개소에 변경개시를 열도록 하였고, 말이나 농기구를 비롯하여 후금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받았다. 이는 조선에는 부담이 되었다.⁷⁾

1636년, 혼타이지는 만주인, 몽골인, 한인으로부터 추대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청, 연호를 승덕이라고 하였다. 혼타이지는 만주인의 한에서 만주인·몽고인·한인의 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된 것이었다. 후금과 조선의 관계는 1627년 화목 이후에도 원활하지는 못하였으며, 1636년 혼타이지(태종)가 대청국 황제로 즉위하였을 때에 조선의 사신이 혼타이지에게 예배함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혼타이지는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조선에 출병하게 되었다(병자호란). 조선 국왕 인조는 수도 한성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하였으나 다음해인 1637년에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조선은 청의 속국이 되었고, 청나라의 책봉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이 체제에 조선이 참가하는 모습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조공무역 등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조선측에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만주개발을 위해 말이나 농기구 등의 보급기지로 하기 위한 전략상

4) 위 책, 76-77쪽.

5) 위 책, 78-83쪽.

6) 松丸道雄他 編, 《世界歴史大系 中國史 4 - 明~清 - 》(山川出版社, 東京 1999) 310쪽.

7) 寺内威太郎 <李氏朝鮮と清朝との辺市について(一)(二)> 《駿臺史學》 No.58, 59, 駿臺史學會, 東京 1983.

의 필요에서 청나라가 군사력을 통해 스스로의 책봉체제에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이 책봉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군사력이 필요하였다. 이적시하여온 만주인인 청에게 굴복하여 신하가 된 것은 조선에게는 굴욕이었으며, 국내에 소중화사상이 대두되었다.

그 후, 청에서는, 1643년에 혼타이지가 병사하고, 3대 황제 세조가 즉위하였으며, 다음해인 1644년에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 명나라가 멸망하자 베이징에 입성하였다. 이른바 화이변태이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 조선은 스스로가 중화라는 의식을 강화하였다(소중화사상). 송시열은 청을 공격하자는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중화의식은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 베트남에서도 보여진다.⁸⁾

1637년 조선국왕 인조는 청 혼타이지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이후 조선 역대 군주는 청의 황제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책봉되었다. 그 결과 조선국왕은 청조 황제의 신하가 되었으며, 청의 원호를 사용하고, 청조에 조공을 행하였다. 청(종주국)과 조선(속국)의 종속관계는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서로서는, 청국황제는 조선국왕에게 고명(誥命), 조(詔), 칙(勅), 제문(祭文)등을 하사하고, 칙사를 파견하여 국왕으로 책봉하였다. 이 때에 청의 통역관이나 조선의 사절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국왕을 책봉하는 칙사를 책봉사라고도 불렀다. 책봉에는 청이 속국에 칙사를 파견하여 행하는 경우와, 청이 칙사를 파견하지 않고 속국의 사절에게 책봉의 칙서와 인장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청이 칙사를 파견한 것은 조선, 월남, 유구 3국뿐이며, 그 외의 라오스, 태국, 스루, 버마 등에는 칙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조선과 월남 그리고 유구가 속국 중에서도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3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에 보내는 책봉사의 품계는 정3품 이상이었고, 월남과 유구의 경우는 정5품에서 종7품였다. 조선은 월남이나 유구보다 우대받고 있었으며, 속국 중에서는 수위(首位)였다.⁹⁾

조선국왕은 청국황제에게 표(表), 주(奏), 제문(祭文) 등을 봉정하였으며, 이러한 문서는 조선국왕이 청국황제에 파견한 조공사에 의해 전달되었다. 조선의 조공사는 정기적인 것으로, 1637년에서 1644년까지는 매년 연공사(年貢使 - 歲幣를 헌상하는 사절)와 삼절사(三節使 - 동지사, 성절사, 정조사)가 파견되었다(1년 4공). 다만 동지사가 연공사를 겸하였다. 1644년 이후는 동지사가 성절사, 정조사를 겸한 결과, 삼절겸연공사 혹은 그냥 동지사라고 일컬어졌다. 임시 사절로는 사은사, 진하사, 진주사, 주청사, 진위사, 진향사, 고부사, 문안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절 이외에 역관(통역관)중에서 임명된 재자관(齎咨官), 재주관(齎奏官) 등도 파견되었다.

조공사는 청국 내에 들어서면, 정해진 조공로(진강성 → 책문 → 봉황성 → 성경 → 광녕 → 사하역 → 산해관 → 永平府 → 薊州 → 北京)를 거쳐 베이징에 들어가며, 정해진 숙소인 예부의 會同館에서 머물렀다. 식비는 光祿寺가 부담하였다. 1637년부터 1894년까지 513회의 사절이 파견되었다. 최후의 사절은 1894년 정사 이승순, 부사 민영철, 서장관 이유재로 이루어진 進賀兼謝恩行이었다. 사절 일행의 인원수는 1회에 약 200~300명 정도였다.

이러한 조공에 대해, 청 황제로부터는 이른바 <조공회사(朝貢回賜)>가 행해졌다. <조공회사>는 일반적으로 <薄來厚往>이라고 불리며, 조공국에 이익을 주었으나,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이 부담하는 세폐비, 방물비, 사절경비, 칙사영접비 등과 청 황제의 回賜의 차이를 생각하면, 조선

8) 注6)의 317쪽, 岸本美緒・宮嶋博史共著 《世界歴史 12》(中央公論社, 東京, 1998), 254-256쪽.

9)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山川出版社, 東京 1975) 496, 553-554쪽.

측의 부담이 컸다.

청과 조선의 책봉체제(조공관계, 종속관계)는 청으로서의 이 체제가 갖는 본래의 군사적 안전 보장의 면과 만주의 물자보급기지 확보라는 두가지 점이 있었으나, 조선으로서의 만주의 물자보급이었던 국경개시(辺市)를 비롯하여, 본래는 <薄來厚往>이라고 불리는 조공도 부담이 되었다.¹⁰⁾

2) 월남과 청의 관계

베트남의 국가와 청과의 관계는, 안남국왕 黎維祺가 청 세조로부터 1661(順治8)년에 상을 받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 후, 베트남에서는 西山朝(1788~1802)를 거쳐서, 1802년에 광남 완씨인 阮福暎(1762~1820)에 의해서 阮朝가 세워졌다. 阮福暎은 하노이(河內)에서 즉위하고, 嘉隆을 원호로 하였다. 후술하지만 월남은 청에 복속하지만 독자의 원호를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다. 수도는 호에(順化)에 두었다. 지배영역은 지금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과 거의 동일하며, 紅河 삼각주를 비롯한 북베트남은 北城總鎮, 쿠안빈에서 빈투안에 이르는 지역은 直隸, 사이공을 중심으로 하는 메콩강 델타지역은 嘉定總鎮이라고 각각 불렸다. 직예는 호에 정부에 의해 직접 지배받았으나, 북성총진과 가정총진에는 대폭적인 자치가 허용되었다.

阮福暎은 즉위 다음해인 1803년에 鄭懷德을 사절로 北京에 파견하여, 책봉과 <남월>이라는 국호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1804년 청조는 <남월>이라는 이름은 일찍이 있었던 趙佗의 남월국을 생각나게 하므로 불가하다고 하여, 남월의 남과 월의 순서를 바꾸어 <월남>(중국의 남쪽 변경이라는 뜻)이라는 국호를 하사하고, 阮福暎을 월남국왕으로 책봉하여 <월남국왕지인>을 수여하였다. 이 인장은 후에 월남이 1884년에 프랑스와 파르노르 조약을 체결할 때 폐기되었다.¹¹⁾

이처럼, 청과 월남의 종속관계 성립은, 월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청나라의 제시로 성립된 조선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례이다. 월남이 청과 종속관계 성립을 요구한 이유로는, ① 청에 종순함을 보임으로 월남의 국제적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② 청의 책봉을 얻음으로 인하여 월남국왕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내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③ 청 황제의 조공회사에 의해 견직물, 한적, 의약품 등 귀중품을 얻는다, 등을 들 수 있다.¹²⁾

청에서 월남에 보내는 칙사(책봉사)는 베이징에서 직접 파견된 것은 아니고, 광서안찰사가 칙사로서 월남에 파견되었다. 칙사는 청나라 초기인 건륭말년까지는 베이징에서 안남으로 파견되었으나, 1793년 西山朝의 阮光纘씨를 안남국왕으로 책봉한 이후는, 광서안찰사가 칙사로 파견되었다. 월남에 보내는 칙사의 품계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종5품에서 종7품으로, 조선에 보내는 칙

10)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서울 1977) 59-112쪽. 糟谷憲一 <近代的外交体制の創出> (荒野泰典他 《アジアの中の日本Ⅱ 外交と戦争》(東京大學出版會 1992) 224-228쪽. 原田環, 《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廣島 1997) 33-39쪽. 한편 조선의 對淸貿易史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란다. 張存武, 《淸韓宗藩貿易-1637~1894-》(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台北 1978), 李哲成, 《朝鮮後期對淸貿易史研究》(國學資料院, 2000), 柳承宙 · 李哲成, 《朝鮮後期 中國과의 貿易史》(景仁文化社, 서울 2002).

11) 주9)의 책 493쪽.

12) 坪井善明 《近代ヴェトナム政治社會史》(東京大學出版會 1991) 91-92쪽.

사의 품계보다 낮았다.¹³⁾

월남이 청에 파견한 조공사는 월남에서는 如淸使로 불렸다. 여청사는 당초 1803년의 규정에서는, 2년1공의 세공과 4년 건사 입경1차(베이징에 사절을 4년에 1회 파견)를 동시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839년에 2년1공이 4년1공으로 개정되어, 공물도 반감되었기 때문에, 세공이 조공무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당초의 경제적 의의는 크게 저하하였다.¹⁴⁾

여청사의 사명은, ①국서와 방물을 청 예부에 봉정할 것, ②청의 새로운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 ③ 漢籍을 비롯한 필요 물자를 입수할 것, 등이 주된 것이었다. ①은 조공사로서의 여청사의 공식활동이며, ②③은 월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②③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③의 배경에는, 청이 쇄국정책을 취하여, 청의 상인이 월남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여도, 월남 상인이 청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¹⁵⁾

如淸使의 조공로는 順化(호에) → 하노이 → 진남관(오늘날의 友誼關) → 太平府 → 南寧 → 昭平 → 桂林 → 全州 → 永州 → 長沙 → 岳州 → 武昌 → 信陽 → 鄭州 → 湯陰 → 磁州 → 保定 → 良鄉 → 北京이었다. 여청사는 청에서 귀국한 후에는 국왕에게 구두보고를 함과 동시에 보고서(使程日記)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사정일기는 조선 사절의 건문사건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여청사는 청국 내의 치안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1853년의 여청사는 1850년 광서성에서 발생한 태평천국 운동으로 인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1855년에야 겨우 귀국할 수 있었다. 1857년, 1861년, 1865년 역시 여청사를 파견하는 해였지만, 태평천국의 난과 捻匪의 난에 의해 조공로가 막혀 청의 지시에 의해 파견이 중지되었다. 여청사의 파견은 1868년에 부활하여 1872년, 1876년, 1880년에 파견되었으나, 청불전쟁(1884-1885)이후 단절되었다.¹⁶⁾

그런데, 월남은 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의 경우는 1644년 명의 멸망과 청나라의 北京 입성 이후, 스스로를 소중화라 자임하였다. 당시 인도지나에 있었던 안남에서도 그러한 의식은 강하였다. 인도지나에서 이와 같은 의식의 형성은, 1428년 黎利가 세운 黎朝인 대월에서 확인된다. 이 대월은 과거제도를 완성하는 등, 이른바 중국(中華之國)적인 중앙집권국가를 확립하고, 인도지나판 중화의식이라고 말할 만한 <남국>의식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남국>이란, 대월의 북쪽에 있는 <북국>으로서의 명에 대항하여, 대월을 명과 동등한 남쪽의 중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북의 중국인 명에 대하여, 대월은 남의 중국으로, 명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월에서는, 京人을 비롯한 남인을 문명인으로 하고, 그 주위에 蠻夷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도지나판 중화사상은 19세기 월남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阮福暎은 1802년에 새로운 阮朝를 세우고, 다음해 스스로 청에 책봉을 요구하여 사절을 보내었으나, 이는 월남국내외에서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조선과 같이 청에 강제당하여 복속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조선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처럼, 월남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청의 속국이 되었으나 의식적으로는 청과

13) 주9)의 책 552-555쪽.

14) 동상, 496, 555-559쪽.

15) 동상, 498-501쪽.

16) 동상, 500-501쪽.

대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15세기 대월국 이래의 <남국>의식을 계승하고, 만주인인 청에 대하여 스스로를 한인의 명과 동일시하여, 중국이라고 자임하였다. 그러므로 만주인인 청을 夷狄으로 보고, 스스로를 소중화라 자임하였다. 청과 동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청을 <북조>, 스스로를 남조로 보고 청과의 관계를 상하의 종속관계(군신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수평의 <邦交>라고 자리매김하였다¹⁷⁾. 월남의 군주는 현실의 책봉체제 하에서 청 황제 앞에서는 <월남국왕>이지만, 월남 국내에서는 청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황제> <천자>라 칭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원호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월남의 창건자인 阮福暎은 1802년에 <嘉隆(자룽)>이라는 원호를 제정하고, 나아가 1806년 이후에는 황제라 칭하였다¹⁸⁾. 국호도 청에 보내는 공문서에는 <월남>을 사용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남국>의식에 따라서 <大南>을 사용하였다. 그런고로 월남에서는, 정사인 《大南寔祿》을 비롯하여, 《大南一統志》 《大南會典事例》와 같이 欽定書에서는 책 이름에 <大南>을 붙이고 있다¹⁹⁾.

월남은 남방의 중국이라고 자임하기 위해서 속국을 창출하고, 캄보디아, 버마, 라오스, 샴(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까지도 속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것은 청에서도 보이는 일이다²⁰⁾.

월남의 입장에서 북방의 청나라는 가상적국이며, 청과의 국경은 스스로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고정되었으나, 남쪽의 코치지나와의 국경은 고정되지 않았으며,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阮朝의 월남은, 스스로를 북방의 청과 대등한 남방의 중국이라고 자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월남은 남방의 <제국> <중주국>으로 행세하였다²¹⁾.

구체적으로, 嘉隆帝(阮福暎, 재위 1802~20) 시대의 국정을 살펴보자. 우선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에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은 6부가 설치되고, 황제 밑에 尙書가 내각을 형성하였다. 법제면에서는, 1807년 黎朝의 형률을 고쳐서, 皇越律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황월율령은 청나라의 大清律令을 모방한 것으로, 실효성은 떨어졌다. 군제에서는 군대는 15만 명으로, 揀兵(징병), 募兵(용병), 지원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황제 직속의 嘉隆軍團은 사적인 군사집단이었던²²⁾.

외교에서는, 캄보디아를 속국으로 간주하였다. 1807년에 嘉隆帝는 캄보디아의 왕 안찬을 高綿 국왕으로 봉하여 인수를 하사하고, 3년 1공을 명하였다. 조공로, 인원, 공물, 일정 등 조공의례가 자세하게 규정되었다. 캄보디아는 1810년대에는 거의 매년 조공하였다. 월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은, 청나라가 속국에 대응하는 것을 모방한 것으로, 월남판 종속관계(책봉체제)의 출현이었다²³⁾.

17) 동상, 538-543, 563쪽.

18) 石井米雄他 編, 《東南アジア史 I 大陸部》(山川出版社, 1999) 214-215쪽.

19) 동상, 220쪽. 주9)의 책 493-495쪽.

20) 주9)의 564쪽.

21) 주12)의 88-91쪽.

22) 주18)의 215쪽.

23) 동상, 217-218쪽.

Ⅲ. 아편전쟁 이후

1. 조 선

아편전쟁 당시 조선의 군주는 현종이었다. 조선은 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깝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베이징에 조공사절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속국 중에서 가장 많이 청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조선 사절의 아편전쟁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840년 9월 20일 정사 완창군 時仁이 국왕 현종에게 행한 보고였다. 현종이 <요즘 중국에서 정란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들은 말이 있는가?>하고 완창군에게 묻자, 완창군은 <제가 청에 갔을 때에 실제 이러한 말이 있었습시다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귀국할 무렵에 병사들을 소집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듯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현종이 <정란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하고 묻자, 완창군은 <일설에는 영국이라고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정란이 일어난 장소는 베이징에서 약 3000리 남쪽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진장과 청의 교전상대국 영국을 혼동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애매한 답이다. 당초 아편전쟁에 관한 조선 사절의 보고는 이 정도였다²⁴⁾.

1843년 4월 28일 정사 홍인군 最應의 보고에는, 현종에게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1842)의 체결을 전하고 있으나, 조약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1845년 5월 4일에 서장관 尹攢이 청나라의 광둥, 복건, 절강성 등을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사 홍완군 最應이 청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아편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없다. 이렇게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이 사절 부사인 權大肯이 청나라 魏源이 쓴 《해국도지》(50권본)를 조선에 들여왔으나, 조선의 海防 사상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권대공은 1850년에 사절의 정사로 베이징에 파견되어, 다음해 4월 귀국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이 보고에서, 아편이 영국에서 수입되어, 청국 내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 때 대왕대비가 아편이 청에서 조선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자, 권대공은 조공로 상에 있는 책문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주부에 명하여 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미의 침입에 대한 우려는 청에 의한 방어를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권대공의 의견은, 구미의 침략에 대해서는 중주국 청나라의 방위력에 의존하고, 아편의 유입은 스스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권대공의 의견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당시 조선 정부의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웨스턴·임팩트에 대해 청의 힘을 빌리려는 조선 정부의 자세는, 1832년 로드·암허스트호 사건에서 이미 나타난다²⁵⁾.

아편전쟁 후에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1851-64)에 대해서는, 1853년 5월에 사절 부사 李寅臯가 <鼠竊狗偷之徒>, 즉 ‘좀도둑 류’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 후 조선의 외교문서인 《동문회고》에 태평천국의 기술이 나타나지만, 어느 것도 강남의 사건으로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

24) 주10)의 출처, 55-56쪽.

25) 동상, 56-57쪽.

다²⁶⁾. 이에 반해서 월남은, 태평천국이 거병한 광서성에 인접하고 있는 데다가, 태평천국군의 일부가 국내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긴장감은 높았다.

아편전쟁이나 태평천국난에 대해 조선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으나, 그 후 애로우호전쟁(제2차 아편전쟁, 1856~1860)에서 영불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1860)하고 북경조약을 체결(1860)하자 긴장하였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영·불·미·러와 북경조약을 맺고, 天津 등 11개 항구를 개항하고, 내지여행권, 외교사절의 베이징 상주, 중국인의 외국 도항을 공인하고, 공문서에 <夷>자를 사용하지 말 것, 구룡반도를 영국에 할양, 아편무역의 합법화, 기독교 포교의 자유, 러시아에 연해주를 할양 할 것 등을 받아들였다.

이 조약의 결과, 조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한다는 것과 공문서에 <夷>라는 글자를 쓰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보이듯이, 종래 화이사상에 지탱되어 온 청나라의 구미에 대한 외교가 부정되고, 청 스스로가 조약 체제에 완전히 포함된 것이었다. 그 결과 1861년에는 외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친왕을 수반으로 하는 총리각국사무아문(총리아문)이 청조에 신설되었다. 책봉체제(조공체제)의 개편이 시작된 것이었다.

북경조약의 체결이라는 상황을 사절 정사 신석우는 1861년 5월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다> 고 보고하여, 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신석우는 조선은 '洋夷'에게는 무역상 매력에 없고, 태평천국군은 청의 군사력에 의해 저지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다면 크리스티교도나 아편상습자 등의 내용이 있으면, <洋夷>나 태평천국군이 침입할 우려도 있다고 말하여, 오로지 국내 민심의 안정을 강조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신석우의 주장의 근거에는, 중주국 청을 조선의 방과제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은, 웨스트·임팩트 하에서는 조선 스스로가 청과의 종속관계(사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²⁷⁾.

신석우의 보고 이전에는, 일본이 아메리카 등 5개국과 자유무역을 행한다는 통고가 1860년에 에도막부로부터 있었으나, 조선정부는 특히 문제로 삼지 않고 양해하였다. 그러나 이 통고 후에 신석우의 보고가 있었으며, 조선정부는 구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攘夷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이 구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양이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였다. 1863년 칠종이 서거하고 흥선군의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하자, 흥선군은 대원군이 되어 1873년까지 실권을 잡았다. 대원군 시대(1863~1873)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 쇄국 양이정책이 가장 심하여서, 구미와 무력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1866(고종3, 병인)년에는, 이른바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이 양요는 1866년에 일어났던 오페르트트 내항, 샤면호 사건, 프랑스 함대의 습격이라는 세 가지 사건의 총칭이다. 샤면호 사건 후, 같은 해 8월에 정부는 척사윤음을 공포하여, 쇄국양이정책을 명백히 하였다. 그 후, 프랑스 함대가 습격하였다.

1868년에는, 독일의 모험상인 오페르트트가 조선정부에 교역을 요구하면서 충청도 홍주군에 있

26) 동상, 57-58쪽.

27) 동상, 58-60쪽.

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다(오펜트사건).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샤먼호 생존자의 인도를 요구하며 습격하였다(신미양요). 대원군은 이들을 격퇴한 후,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양이의 의지를 밝혔다²⁸⁾.

대원군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조선은 청의 속국이므로 외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하였다.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은,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의 쇄국양이정책의 수행은, 1637년 혼타이지의 무력에 의해 성립된 청과의 종속관계를 조선측에서 강화한 것에 다름 아니며, 청과 조선과의 종속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 조선의 대외문제를 청과의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대원군의 전략에 대해서, 청은 조선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하였다²⁹⁾.

대외문제의 처리에 청과의 종속관계의 논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대일문제에서였다. 대일문제는 1868년에 에도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새롭게 성립하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 발생했다. 에도막부시대에는 일본의 대조선외교를 대마도의 종씨가 가역으로서 창구가 되어 담당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국정의 근대화에 의해 일본의 대조선 외교도 본래는 東京 중앙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할 터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가역을 잃는 것은 대마번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대마번은 메이지 정부에 진정하여 당분간 대조선 외교의 창구를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마번이 담당하도록 허락받았다. 대마번에 있어서 대조선 외교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대조선 외교 창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기 위한 절대조건이었다.

대마번은, 메이지 유신 후에도 대조선 외교 창구를 대마번이 계속하여 담당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서계(외교문서)를 1869년 1월에 에도시대의 절차대로 동래부에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의 왜학훈도 안동준은 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의 이유는 대마번주 종의달 명의의 이 문서에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이라는 새로운 직함, 새로운 도장, <황> <칙> 등의 문자가 사용되어 있는 것이 서식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³⁰⁾.

거부 이유의 근거에는 ① 대마번을 조선의 속국시 하는 것, ② 일본을 조선과 같이 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었다. ① 은, 조선이 지급한 종래의 인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난다. ② 는 <황> <칙> 등의 문자 사용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대마번은 조선의 속국도 아니며, 일본도 청의 속국이 아니었다. 청의 속국이 아닌 일본이, <황>이나 <勅>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왜학훈도 안동준의 거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웨스턴·임팩트가 초래한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원군의 전략은, 조선에 대한 구미의 개국 압력에 대해서는 청을 방파제로 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후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청의 견제력을 기대하는, 청과의 종속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②의 논리는, 1871년 일본과 청이 대등한 일청수호조규를 체결한 것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정되었다. 이 것은 청과의 종속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대원군의 대외전략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조선정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1872년 5월, 사절 정사 민치상은,

28)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朝鮮總督府, 京城 1940) 52-100쪽.

29) 주10)의 출처 66-67쪽.

30) 주28), 133-182쪽.

일청수호조규는 일본이 양이의 이익에 의해 유도되어서 맺은 것이라고 하고, 일본과 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하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청이 서로 처음으로 대등하게 맺은 조약이라는 이 조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서계를 거부하는 논거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았다.

대원군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조선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1873년 10월 사절 정사 이근필은 고종에 보고하기를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천황이 夷狄인 서구의 지원을 얻어서 왕정복고를 수행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1873년 癸酉 정변 이후, 하야한 대원군과 논쟁하여, 대마번의 서계를 수리하여 일본과 복교할 것을 주장한 박규수조차 메이지유신은 기독교도가 된 천황이 <양이>의 도움을 얻어 행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³¹⁾.

1873년 12월에 대원군은 하야하였다(癸酉정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실제로는 대원군 외교가 계속되고 있어서, 대일관계는 서계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본래는 메이지 유신 이후도 대마번이 일본의 대조선 외교의 창구가 되어서 舊來의 국교를 계속 한다는 전달에 불과하였던 서계가 조선 측에게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일본의 대조선 외교 업무는 대마번에서 東京의 외무성으로 집약되었다.

1874년 8월, 이러한 딱 막힌 상태를 청에서 온 密咨가 전환시켰다. 이 密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해에 타이완에 출병한 일본은, 조선에도 파병하고자 하는데, 프랑스·미국도 여기에 동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선은 프랑스와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는 것이었다. 박규수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정부는, 프랑스 미국과 조약체결을 하는 것 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수복하자고 하였으나, 대원군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 밀자는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청이 직접 나설 수 없고, 프랑스나 미국에 의한 견제 외에는 수단이 없었던 사실을 말해주며,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은 청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것, 즉 일본은 청의 속국이 아닌 것을 말해준다. 이 일은 조선에게 전에 일청수호조규 체결의 의의를 다시금 상기시켜서 대일서계문제에 보이는 대원군 외교의 파탄을 보여주었다. 박규수는 이러한 인식에서 그 이후 대원군과 대일외교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북경조약 체결(1860) 이후의 청조의 움직임(양무운동)에 비판적이었다. 양무운동의 중심인물인 공친왕에 대해, 1872년 6월, 서장관 박봉빈은 양이의 중국침범에 공친왕이 내응하였다고 보고하고, 1874년 5월 서장관 이호익은 공친왕을 <誤國之人>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박규수조차도 1874년 8월 次對 석상에서, 북경조약은 공친왕이 체결했고, 최근에는 사교(크리스티교)에 빠져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친왕에 대한 불신감은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 조선의 소중화의식은 점차 강화되었다. 1874년 5월, 사절 정사 정건조는, 지금이야말로 조선만이 <華>이며, 청은 <夷>라고 말하고 있다. 홍순목은 조선은 자본주의의 오염에서 벗어난 유일한 <乾淨>한 땅이며, 이는 조선이 <예의지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인은 통상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륜이 결여된 금수이며, 일본인도 마찬가지이다(왜양일체), 라는 것이 박규수를 포함한 조선정부의 공통인식이었다. 다만, 이러한 인식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³²⁾.

31) 주10)의 출처 68-69쪽.

32) 동상, 70-73쪽.

청조의 만인 관료에 대한 반발에 비하여 한인 관료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특히 이홍장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이홍장은 양이파가 아니라, 공친왕에 연결되는 양무파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조선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교착상태가 계속되었으나, 1875년 9월 20일,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초지진대와 영종진과 교전하기에 이르렀다. 박규수가 걱정하고 있던 사태였다.

다음해인 1876년 2월, 강화도 연무당에서 일조 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은 전권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 부전권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조선측은 대관 신현, 부대관 윤자승이었다. 일본측은 군함3척과 수송선 3척으로 들어왔다.(단 사령관이 없었으므로 함대는 아니다). 박규수는 일청수호조규 제1조 <大清國・帶日本國 … 兩國所屬邦土 … 不可稍有侵越 … 云云>에 의거하여, 일본은 군함으로 조선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공격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규수의 생각으로는, 조선은 청의 <所屬邦土>에 포함되어 있었다. 박규수는 강화를 주장하고, 대원군은 강화에 반대하여 대립하였다. 박규수는 책봉체제 틀 속에서 조선을 생각하고 있었다³³⁾.

덧붙여서 말하면, 일조교섭에서, 이홍장은 조선이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유원이 사절로 청에 파견되었을 때(1875.8~1876.1)에, 국왕 고종의 명에 따라 서한을 올린 바, 그 답서(1876.1.10)에서 이홍장이 말한 것이다. 그 서한에서 이홍장은, 조선이 일본과 평화적으로 통교할 것을 바람과 동시에, 조선의 외교는 자주적인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여를 피하고자 하였다. 박규수의 움직임은, 일본과 평화적으로 통교를 바라는 이홍장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홍장이 조선의 외교에 개입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이 시기를 놓치고, 서계문제로 대일관계에 시간을 뺏겨버린 것은, 그 후, 조선이 청에서 자립하는 데에 큰 손실이 되었다³⁴⁾.

1876년 2월 27일, 전12款인 일조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제1관은 조선이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 제2관은 양국의 외교사절을 상대국의 수도에 서로 파견하여 주재시킬 것, 제3관은 조약의 정문으로서 일본은 일본어, 조선은 한문을 사용할 것, 제5관은 조선이 2개 항구를 개항할 것, 제10관은 개항지에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할 것 등이었다.

당초 일본측의 의도는, 이 조약으로 조선을 청의 책봉체제에서 독립시켜서, 조선과의 사이에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조약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어디까지나 책봉체제의 틀 안에서 일본과의 관계 수복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조급한 근대 관계의 수립에는 저항하였고, 스스로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기피하였으며, 일본에 개항지를 일부러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조약은 일본과 조선과 사이에 편무적인 내용이 되어 버렸다.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조수호조규 체결 후에도 일조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일조수호조규를 준수하여 대일관계를 개선하도록 충고하였다(1878년 9월 29일자, 1879년 2월 16일자). 이는 일조관계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사대교

33) 동상, 176-181쪽.

34) 동상, 196-197쪽. 朝鮮의 對淸政策에 대해서는, 權錫奉 《淸末對朝鮮政策史研究》(一潮閣, 서울, 1986), 具仙姬, 《韓國近代對淸政策史研究》(혜안, 서울, 1999), 王明星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1-1910)》(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98), 淸의 對朝鮮政策에 대해서는 權赫秀 《19世紀末韓中關係史研究》(白山資料院, 서울, 2000)을 참조. 淸과 朝鮮의 關係史로서는 송병기 《근대한중관계사연구》(단대출판부, 서울, 1985) 楊昭全 · 韓俊光 《中朝關係簡史》(遼寧民族出版社, 瀋陽, 1992), 白新良 主編 《中朝關係史》(世界知識出版社, 北京, 2000) 등을 참조.

린 관계 속에서 교린관계를 만국공법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중앙아시아 이리 지역을 둘러싸고 청나라가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으며, 청의 대조선 정책은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등과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하려는 反露連日 전략에 기초하고 있었다³⁵⁾.

1879년 4월에 유구의 폐번치현이 실시되자, 청의 안전보장상 조선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총리각국사무아문은 이홍장에게 조선을 보전시키기 위해 구미에 개국을 시켜서 일본을 견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홍장은 조선이 일본에게는 일조수호조규 체결 이후에도 조약의 불이행이 있으며, 구미에 대해서는 쇄국 양이정책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이나 구미와의 마찰이 격화되어 조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홍장은 그 때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조선의 대외정책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이는 청의 대조선 정책의 전환이며, 종래의 종속관계의 변질이었다. 그 이후 청은 스스로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조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홍장의 이유원에게 보낸 서한(1879년 8월 26일자)에서 종래의 ①일본과의 조약 준수 이외에, ②군비의 강화 ③ 구미에의 개국을 새롭게 권고하고 있다. 이홍장에 의하면 구미에 조선을 개국시켜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以夷制夷>의 책이었다. 조선은 ②는 받아들였으나, 만국공법의 수용과 직결되는 ①, ③은 거부하고 조선 자신의 근대화도 부정하였다. 유일하게 받아들인 ②에 관해서는, 후일 천진에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실현되었다³⁶⁾.

1880년대에 들어와 조선의 대외정책은 크게 전환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880년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에, 청나라 주일공사관 參贊官 黃遵憲이 쓴 《조선책략》을 받아 귀국한 것이었다. 이 《조선책략》(《수신사기록 전》, 한국국사편찬위원회, 1971)은, 黃遵憲이 상사인 주일공사 何如璋의 지시를 받아 정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러시아를 조선의 가상 적국으로 삼고, 러시아에 대한 대책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여 자강을 도모할 것을 권고한 것(策朝鮮, 今日之急務, 莫急於防俄, 防俄之策, 如之何, 曰親中國, 結日本, 聯美國, 以圖自強而已)으로, 반러연일의 전략이며, 이홍장도 이를 지지하였다. 이 《조선책략》도 중앙아시아의 이리지역을 둘러싼 청과 러시아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조선의 대외정책을 청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취급하여, 조선정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이었다.

《조선책략》은, 청의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지만, 조선이 취할 개국정책에 대한 전망을 상세히 전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도 개국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정부는 이 《조선책략》에 의해 중주국의 지시를 받았다는 형태로 국내의 쇄국양이파(위정척사파)의 반대운동(신사위정척사운동)을 누르고 개국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대외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미국과 사이에 일어났던 샤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에 대해 재검토를 행하여, 두 사건은 조선인이 일으킨 것으로 하고, <연미>책으로의 길을 열었다. 조선은 대외정책의 전환을, 청과의 종속관계의 틀을 이용하여 청과 조선국내의 동향에 배려하면서 진척시켰다. 청과의 종속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을 조선은 종종 이용하였다. 우선 1880년 12월에, 일조수호조규 제2관 公使駐劄 問題의 결착을 지어서, 공사 상호주제를 인정하였다³⁷⁾.

35) 주10)의 출처 198-203쪽.

36) 동상, 204-212쪽.

37) 동상, 212-216쪽. 주34) 權錫奉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79-146쪽,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881년 1월에는 개국 근대화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조선정부 안에 통리기무아문(내아문)을 신설하였다. 이는 청의 총리각국사무아문을 모델로 한 것으로, 事大司, 交隣司, 軍務司 등 12司가 있었다. 그러나 청을 담당하는 事大司와 일본을 담당하는 交隣司는 있었으나, 미국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다. 행정시스템으로서는 여전히 사대교린체제의 틀 속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조선의 개국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생의 天津 파견(1881년 11월), 별기군(서양식 군대)의 신설(1881년 5월), 시찰단(신사유람단, 전62명, 통역제외)의 일본파견(1881년 5-8월)등이다. 신사유람단은, 일본 정부의 제관청을 시찰하고 방대한 보고서와 복명서를 작성하여, 조선 근대화에 자료를 제공하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보기 전에 임오군란(1882년 7월)이 일어났다.

앞서 《조선책략》에서는 ‘친중국’의 구체적 방책으로 <稍變旧章>, <結日本>의 구체적 방책으로 <亟修條規>, <聯美國>의 구체적 방책으로서 <急締善約>을 말하고 있다. <結日本>의 <亟修條規>는 日朝修好條規를 遵守하는 것이었다. <聯美國>의 <急締善約>은 조선이 미국과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 것이었다. <親中國>의 <稍變旧章>이란 청과 조선의 관계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朝鮮策略》에서는 구체적 사례로 <即奏請, 陪臣常奏(駐?—引用者) 北京, 又遣使居東京, 或遣使往華盛頓, 以通信息, 即奏請, 推廣鳳皇(凰)廳貿易, 令華商乘船來釜山·元山津·仁川港·各口通商·以防日本商人之隴(壟)斷…云々>을 들고 있다³⁹⁾. 조선은 이 부분에 착목하여, 이를 호기로 생각하여 청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은, <派使駐京> <開海禁> <開市改編>의 3개항이었다. <派使駐京>은 《朝鮮策略》에서 말하는 <即奏請, 陪臣常奏(駐?—引用者) 北京, 又遣使居東京, 或遣使往華盛頓, 以通信息>에 觸發되어서 제기한 것으로, 사절과 칙사의 경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던 조선은 《朝鮮策略》의 이 문언에 주목하였다. 朝鮮의 주장은, 사절을 상대방의 수도에 주재시켜서 사절과 칙사의 상호 파견을 폐지하자고 하였다. 이는 말하자면 근대적인 외교관계로서의 공사의 상호 주재이다. 아울러 조선은 현안이었던 일본공사의 한성 주재를 1880년 12월에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開海禁> <開市改編>이란 《朝鮮策略》에서 말하는 <即奏請, 推廣鳳皇(凰)廳貿易, 令華商乘船來釜山·元山津·仁川港·各口通商·以防日本商人之隴(壟)斷…云々>에 의거한 것으로, 청나라가 해상무역을 금지하였던 것을 해제하는 것(<開海禁>), 조선에 부담이 되었던 會寧開市를 폐지하고, 다른 변경개시도 개편할 것(<開市改編>) 등이었다.

조선정부는 1882년3월에 어윤중과 이조연을 청에 파견하여, 미국과의 통상조약에 대해서 이홍장과 협의함과 동시에, <派使駐京> <開海禁> <開市改編>의 3개항에 대해서 청국 정부와 절충하였다. 미국과의 통상조약은, 이홍장이 미국의 슈펠트와 직접 교섭한 결과, 일본이나 청이 맺은 조약보다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1882년 5월에 체결되었다.

3개 항목에 대해서 청국정부는 <派使駐京>을 종래의 조공관계의 논리에 서서 예부로 넘기고, <開海禁>과 <開市改編>의 통상관계는 만국공법의 논리로 총리각국사무아문에 넘겨 취급하게

》第Ⅱ—Ⅴ章 참조.

38) 주10) 268-276쪽. 統理機務衙門에 대해서는, 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一潮閣, 서울 1989) 2-24쪽, 紳士遊覽團의 訪日에 대해서는, 許東賢, 《近代韓日關係史研究》國學資料院, 서울 2000) 참조.

39) 주10)의 출처 250-258쪽.

하였다.

<派使駐京>을 청이 승인하는 것은, 조선이 속국으로서 행하는 의례를 부정하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예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청은 1636년의 병자호란에 의해 성립한 종속관계를 단순한 교섭에 의해 폐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예부는 조선이 <派使駐京>을 제기한 것은, 버마, 월남, 유구 등이 차례로 영·불·일 등에게 빼앗긴 결과, 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월남문제는 청의 대조선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조선은 청과의 조공관계의 부담을 줄일 의도였으며, 종속관계의 폐기, 환언하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開海禁>은 1882년 8월에 임오군란이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 10월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년)으로 체결되었다. <開市改編>은 奉天与朝鮮邊民交易章程(中江通商章程, 1883年), 吉林与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吉林貿易章程, 1884年)이라는 2章程으로 조약화되었으나, 조선과 청사이의 국경확정문제를 일으켰다.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前文에는, <惟此次所訂水陸貿易章程, 係中國優待屬邦之意, 不在各与國一体均霑之列>(<《中朝約章合編》, 東京大學阿川文庫所藏)이라고 하여, 이 조약이 종주국인 청이 속국인 조선을 우대하여 체결되었음을 명기하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과 그 조선에 청나라가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의 3章程은 모두 조선측에 불리한 내용이었다. 요컨대 청은 옛 종속관계(조공관계)하의 조선과의 국경교역을 조약화하여 이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다⁴⁰⁾.

조선정부는 <조선책략>을 거꾸로 이용하여, 청과의 종속관계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조선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조선정부의 입장은, 1882년 7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에 의해 약화되었다.

이 군란에 의해 왕궁이 습격을 받았고, 사상자가 생겼으며,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받아서 하나 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공사 일행은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부활하여, 조선정부가 그때까지 행해온 개국근대화 정책을 부정하였다. 이 사태에, 청에 있었던 김윤식과 어윤중은 청군의 출병을, 일본에 있었던 유길준과 윤치호는 일본군의 출병을 각각 요청하였다.

대원군의 쿠데타는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8월 대원군은 청의 吳長慶에 의해 군함으로 天津에 끌려가, 保定에 유배되었다. 그 이유는 <王爲皇帝冊封, 則一切政令當自王出, 君(大院君)六月九日之變(壬午軍亂), 擅竊大柄, 誅殺異己, 引用私人, 使皇帝冊封之王, 退而守府, 欺王實輕皇帝也, 罪當勿赦>(馬建忠 <《東行三錄》 壬午7月 13日條)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책봉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임오군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吳長慶 휘하의 淸軍 약 3000명이 한성에 주류하였다. 이는 병자호란 이래의 진주군으로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였다. 대원군의 保定幽閉는 청나라 종주권 강화의 상징이었다.

1882년 9월이 되자, 조선정부는 대원군에 의해 중지된 개국 근대화 정책을 다시금 착수하였다. 9월 10일에 기무처를 설치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국왕 고종이 개국근대화 정책에 관한 윤음을 내렸다. 신미양요때에 건립되었던 쇄국양이정책의 상징이었던 척화비를 제거하고, 완전히 개국

40) 同上, 295-296쪽. 拙稿 <日淸戰爭による朝淸關係の變容>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淸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 上卷》, ゆまに書房, 東京, 1997) 141-146쪽. 秋月望 <朝中貿易交渉の経緯> (<《東洋史論集》 No.13, 九州大學文學部, 1984).

근대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12월 26일에는, 개국근대화정책의 추진기관으로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을 설치하고, 1883년 1월 12일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으로 개조하였다. 외아문은 외교통상을, 내아문은 군국·내정을 각각 담당하였다. 兩衙門에는, 趙寧夏, 閔泳翊, 閔台鎬, 金弘集, 金晚植, 金允植, 魚允中, 金玉均, 洪英植, 메렌도르프(독일인) 등이 등용되었다. 1883년 11월에는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조독수호통상조약, 1884년 6월에는 조이수호통상조약, 동년 7월에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청나라의 지도 하에 체결되었다.

이 사이에, 1884년 4월에는 仁川口華商民地界章程이 체결되었다. 종래의 청과 조선과의 종속관계는 仁川口華商民地界章程과 같은 새로운 청의 제국주의적 이권을 포함하는 조약관계로 개편되고 있었다. 중국과 주변 제국간의 책봉체제(종속관계)는, 종주국 중국과 속국의 각각의 사정과 이를 둘러싼 국제조건에 따라 다르며, 결코 일정하지는 않았다. 종주국 중국으로서는 책봉체제는 자국의 안전보장 유지가 주요한 것이었으며, 이 관점에서 체제의 構築이 도모되고 있었다. 따라서 속국의 자주가 항상 보증되었던 것의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⁴¹⁾.

이리하여 조선은 개국근대화에 의해 오히려 청에 더욱 예속 당하게 되었다. 유길준이 말하는 바의 兩截체제의 성립이다.

이러한 양절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세력으로서 개화파가 탄생하였다. 개화파는 독립파라고도 불리며, 청에서의 독립을 목표로 한 정치세력이었다. 개화파에 대비되는 것이 수구파로, 사대파라고도 부른다. 사대파는 청에 대한 종래의 사대관계(종속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세력이었으므로 수구파라고도 불린다. 개화파의 인물로서는 金玉均, 朴泳孝, 徐載弼, 洪英植, 俞吉潸, 尹致昊 등이 있고, 事大派의 인물로서는 金允植, 金弘集, 魚允中, 閔泳翊 등이 있었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차이점은 청과의 종속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폐기·독립할 것인가의 차이에 있었으며, 원래는 모두 開國派였으나 임오군란 후에 분열되었다. 덧붙여서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은 모두 박규수의 집에 드나들던 문하생들이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김옥균 등은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청에서 독립할 것을 주장하여,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김윤식등과 대립하였다.

개국파가 개화파와 수구파로 분열한 것은, 1884년 봄에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약 3000명 중 절반이 吳長慶과 함께 봉천성 금주로 이동한 것과, 동년 4월에 청조에서 정변이 일어나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던 공친왕 奕訢 등이 실각하였던 것, 그리고 그해 6월에 월남을 둘러싸고 청불전쟁이 일어나, 프랑스 극동함대가 대만의 기용을 공격하고 푸저우(福州) 해전에서 청의 남양해군 함대를 궤멸시킨 것 등으로 인해, 청나라의 권위가 저하된 것이 배경이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서, 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개국축하 만찬회를 이용하여, 일본 공사관 경비대 200인의 지원 하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갑신정변). 이 축하 만찬회에는, 미국 특명 전권공사 후트, 영국총영사 아스틴, 청국총판조선상무 陳樹棠, 일본공사관 서기관 島村久 등 외국 외교관을 비롯하여, 조선측에서는 홍영식, 박영효, 김홍집, 한규직, 민영익, 이조연, 김옥균, 서광범, 윤치호, 뮐렌도르프 등이 출석하였다. 우정국 옆 민가의 방화를 신호로 결행하여, 민영익을 습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그 후, 국왕 고종을 경주궁으로 옮겨 모시고, 문안차 온 민영목, 민태호,

41) 주10)의 출처, 291-302쪽. 大院君의 保定幽閉에 대해서는, 주37) 權錫奉,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189-337쪽. 仁川의 華僑에 대해서는, 楊昭全他 《朝鮮華僑史》(中國華僑出版公司, 北京 1991) 참조.

조영하, 이조연, 윤태준, 한규직 그리고 고종을 수행하였던 中官 유재현을 살해하였다.

다음날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서광범, 김옥균, 서재필, 홍영식, 박영효, 이재원, 이재완, 윤용열, 김홍집, 김윤식 등이 등용되었다. 민씨와 조씨를 제외하고 왕실, 개화파, 그리고 사대파의 일부(김홍집, 김윤식)로 구성된 진용이었으나, 김홍집과 김윤식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

삼일제인 6일, 개화과정권은 14항목으로 이루어진 국정개혁의 진교(혁신진교, 갑신정강)를 발표하였다. 제1항은, <大院君不日陪還事,朝貢虛禮議行廢止>, 제2항은 <廢止門閥,以制人民平等之權,以人擇官,勿以官擇人事>(金玉均 《甲申日錄》)이었다.

제1항은 청에 대한 공물의 폐지, 바꾸어 말하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이 쿠데타에서 김옥균등은 한성의 이노우에가쿠고로(井上角五郎)를 통하여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이노우에의 말에 의하면, 이 갑신정강에는 보이지 않으나, 국왕의 경칭을 ‘전하’에서 ‘폐하’로, 국왕의 자칭을 ‘짐’으로, ‘왕명’을 ‘칙명’으로 고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칙’ ‘폐하’ 등은 일본과의 서계 문제에서도 논의가 된 말이다. ‘폐하’는 개국파인 박규수조차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짐>, <폐하>, <칙명>의 사용을 제기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말의 사용은, 갑신정변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폐하>의 경칭은 청일전쟁 중인 1895년 1월에 고종이 종묘에서 홍범 14조와 독립서고문을 선포한 이후 사용되게 되었다. <짐>, <칙명>등의 용어는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군주의 칭호를 ‘국왕’에서 ‘황제’로 고친 이후 사용되었다. 모두 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이다.

제2항은 양반제도 등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인민평등지권>이라는 표현은 참신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을 형성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를 위해서는 인민평등권 제정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선구적인 것으로 사상의 제기에 머물렀다.

개화파의 갑신정변은 김윤식 등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3일천하로 끝났다. 김옥균등은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공사 등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하여,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은 일본에서, 서재필은 미국에서 살았다.

망명후, 개화파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것은 일반민중이 무지하였기 때문에 개화파를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총괄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자와의 영향을 받아, 교육에 의해 국민을 형성하고, 국가의 독립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중시하고, 소중학교를 설립하여 실용의 학, 조선어, 조선사를 가르쳐서 국민을 형성할 것, 민권을 신장할 것, 국교로서의 유교를 부정할 것 등을 제기하였다.

갑신정변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사상적으로는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었다⁴²⁾.

2. 월 남

嘉隆帝 이후, 월남의 제2대 군주로 明命帝(재위 1820-1840)가 즉위하였다. 이 시기는 싱가포르의 건설(1819), 영·네덜란드 협정(1825)과 서구에 의한 동남아시아 식민지 분할이 진척되어, 인도양과 남지나해 사이에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였다. 월남은 광둥과 싱가포르를 맺는 중요한

42) 주10) 졸저, 310-332쪽.

위치에 있었다. 明命帝의 치세는, 웨스턴·임팩트에 대해 쇄국체제로 대응하고, 한편 태국이나 버마 방면으로 영토 확대를 꾀하여, 인도지나 반도에서의 소중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하였던 시기였다.

明命帝의 구체적 정책을 살펴보면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쇄국정책. 서구에 대해 쇄국정책을 취하였다. 프랑스(1817, 1821, 1824)와 영국(1825)이 통상요구를 하였으나, 明命帝는 쇄국정책을 취하였다. 이 배경에는 쌀의 밀수출, 아편의 유입, 크리스티교 유입 등이 있었다. ② 영토확장정책. 국호를 월남에서 대남으로 고치고, 중국 남방의 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캄보디아 병합을 꿈꾸었으나, 캄보디아를 속국시 하는 삼(태국)과 충돌하여 실패하였다. ③ 통일책. 북부의 소수 민족에 대해 동화정책을 취하였으나, 저항을 받았다.

明命帝의 뒤를 이은 것은, 제3대 紹治帝(재위 1841~1847)였다. 아편전쟁은 이 소치제의 시대에 일어났으나, 월남 정사인 《大南寔錄》에는 이렇다 할 기록은 없다. 월남으로서 아편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청과 黃埔조약(1884)을 맺고, 그 후 월남진출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⁴³⁾.

제4대 嗣德帝(재위 1847~1883)의 시대는, 明命帝가 만들어 놓은 소중화체제가 해적(水匪)과 태평천국의 잔당, 그리고 프랑스 등에 의해 해체되어가는 시기였다. 이하 연대를 따라 살펴보자.

해적(水匪)은 1854~74년 사이에 紅河 델타 해역에서 발호하였다. 동 시기에 북부 산지에는 청나라로부터 태평천국의 잔당들이 침입하였다. 그 중에서 劉永福의 흑기군은 紅河교역을 독점하여 독립왕국화하였다.

프랑스는 황포조약에 의해 청에 발판을 얻고, 청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남지나해에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여, 프랑스인 선교사 7명의 살해사건(1833~1838)을 핑계로 월남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1847년 프랑스함대가 다낭항을 포격하여, 월남인 희생자 100 수 십 인이 나왔다. 1856년, 프랑스정부가 다낭을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월남이 거부하자, 프랑스함대가 다낭을 포격하였다. 1858년, 프랑스 함대 14척이 다낭과 사이공을 공격한 후, 수도인 호에(順化)를 침공하였다. 1861년에는 프랑스군이 메콩델타 3성을 점령하였다. 여기에 이르자 1862년 드디어 嗣德帝는 굴복하여, 프랑스와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프랑스는 월남의 식민지화를 시작하였다. 조약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크리스티교 포교의 자유, ②메콩델타 3성을 프랑스에 할양, ③메콩강 유역의 자유항해 보장 ④다낭의 3개항의 개항 ⑤프랑스에 대한 배상금 400만 달러 지불.

1863년 월남정부는 파리에 사절을 보내, 메콩델타 3성을 반환해 주도록 프랑스 정부에 요구한 결과, 다음 해인 1864년에 월남과 프랑스 정부 간에 삼성반환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1867년 차우드크 등이 메콩델타 서부 3성으로 진격하여, 프랑스령에 병합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메콩델타와 비엔호아에 이르는 프랑스령 코치시나가 성립되었다.

프랑스가 메콩델타를 점령한 이유는, 청과 인도양을 뚫는 남지나해에서의 거점 확보, 메콩델타의 쌀 수출,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등이었다⁴⁴⁾.

1873년에는 프랑스의 듀피와 가르니에가 紅河 델타의 주요도시를 공격하였으므로, 월남정부

43) 주18), 219~222쪽.

44) 동상, 229~231쪽.

는 흑기군 劉永福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다음해 1874년에 월남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 제2차 사이공조약이 맺어져서, 홍하 운항권과 주요도시에 병사들을 주둔시키는 권리가 프랑스에게 주어졌다.

1882년, 홍하 델타의 해적 소탕을 위해 파견되었던 프랑스의 안리·리비에르가 훈령을 무시하고 하노이 성을 점거한 후, 홍하 델타의 요지를 또 점령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월남은 청에게 출병을 요청하였고, 유영복의 흑기군과 프랑스군이 싸웠다. 유영복은 1883년 하노이에 진격하여 앙리·리비에르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嗣德帝가 1883년 7월에 사거하였으므로, 동년 8월 제1차 호에조약(아르만조약)이 체결되어, 쿠이농과 다낭 두 항구의 개항, 북월남에 프랑스군 출병 등을 프랑스에 인정하였다⁴⁵⁾.

嗣德帝 사후 1년간에 4명의 황제(育德帝, 協和帝, 建福帝, 咸宜帝)가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기 때문에 월남은 완전히 약체화되어, 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홍하델타에서 월남과 청(청조는 유영복을 동경경략대신으로 임명) 연합군은 프랑스군과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전황은 좋지 않았으며, 1884년 5월, 이홍장은 프랑스 대표 에르네스트·호루니에와 청군의 철퇴와 제1차 호에 조약을 추진한다는 天津조약(이-호루니에 협정)을 맺게 되었다.

동년 6월, 프랑스는 주르·파토노르를 호에에 파견하여 월남정부에 제2차 호에조약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은 월남을 프랑스의 완전한 보호국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① 월남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한다. ② 월남의 외교권을 프랑스에게 위양한다. ③ 프랑스군을 주둔시킨다. ④ 쿠이농, 다낭 스안도이 항구를 개항한다. ⑤ 북월남의 통치권을 프랑스에게 위양한다. 청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동년 6월, 프랑스와 무력충돌이 일어나 청불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니토르·쿠르베 휘하의 프랑스 극동함대는 타이완의 基隆을 공격하였으며 청의 남양함대를 푸저우(福州) 해전에서 격파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군 약 3000명 가운데 반수가 청국내로 이동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약화된 것이 갑신정변(1884년 12월) 발생의 한 이유였다.

청불전쟁의 결과, 1885년 6월 天津에서 이홍장과 파토노르 사이에 수호통상화평조약(天津조약, 10조)이 맺어져서, 프랑스의 월남 보호권을 승인하고, 청의 종주권을 포기하였다.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청군과 흑기군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⁴⁶⁾.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월남에서는 아편전쟁의 정보를 여청사를 통해 입수하고, 해방(海防)사상을 형성할 여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황포조약(1844년) 체결 직후인 1847년부터 월남은 프랑스의 침공을 계속 받게 된다. 청 남쪽의 중화제국으로 자임하였던 월남은 약체화하고, 청에 대해 그렇게 자립의 자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싸움 말기에는 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식민성 관할하에 있었던 코치지나와 캄보디아, 외무성 관할하에 있었던 보호국 통킹(북베트남)과 안남(중부베트남)은, 1887년에 인도지나 총독의 통괄하에 들어가, 프랑스령 인도지나 연방이 되었다.

45) 동상, 305-307쪽.

46) 동상, 307-308쪽. 이 사이의 越南, 仙, 淸關係에 대해서는, 邵循正 《中法越南關係始末》(河北教育出版社, 2000) 참조.

IV. 맺음말

청은 해안부 동쪽에 조선, 남쪽에 월남의 두 속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조선과 월남은 타입이 다른 속국이었다.

공통점은 둘 다 국내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중화를 자임하고 있었던 것, 속국을 자국의 주위에 설정하고 종주국 행세를 하려고 하였던 것 등이다.

차이점은, 우선 <자주>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칙사, 조공사, 국경교역에 보이듯이 청과 엄격한 종속관계에 있었다. 일본과의 서계문제는 그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월남의 경우는 청과의 종속관계가 약하고, 속국의 예는 취하지만, 남인도지나에서는 제국으로 자임하여 <황제>칭호와 <원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조간의 서계문제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이처럼, <정교금령>은 <자주>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속국이었던면서도 조선과 월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청조 입장에서 속국의 <자주>는 문자 그대로 <자주>인 월남에서 구속이 강한 <자주>인 조선에 이르기까지 큰 폭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사정에 유래한다⁴⁷⁾.

청군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조선은 임오군란이나 갑오농민전쟁과 같이, 국내문제로 청군에게 출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월남은 프랑스와 전쟁이라는 대외문제로 청군에게 출병을 요청하였다.

웨스턴·임팩트에 대한 대응에서도 다르다. 조선은 프랑스(병인양요, 1866), 미국(신미양요, 1871), 월남은 프랑스와 각각 구미와 직접 전투를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특히 월남은 1847~1887의 40년간이라는 장기간, 프랑스와 직접 전투를 전개하였다. 조선은 청을 방파제로 하려고 하였으나, 월남은 오히려 청의 방파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열거하면, 조선에서는 청이나 일본으로부터 서양정보를 받아들여서, 근대적인 국가 창출을 모색하였으나, 월남에서는 1884년까지의 기간에 별 움직임이 없었다.

월남, 청, 조선이 중화사상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 근대화과정에 진입하는 것은 청일전쟁(1894-95)에 의해 청을 종주국으로 하는 책봉체제가 붕괴한 이후이다.

47) 屬國과 自主에 대해서는, 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名古屋大學出版會, 名古屋, 2004) 参照.

參 考 文 獻

(開港期에 관한 연구업적 중 單行書를 중심으로 열거한다)

○Ⅱ－1

《研究》

(日本語)

-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73
- ・茂木敏夫, 《變容する近代東アジアの國際秩序》, 山川出版社, 東京, 1997
-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東京, 1997
- ・西嶋定生, 《西嶋定生 東アジア史論集》 第3卷, 岩波書店, 東京, 2002
- ・山内弘一, 《朝鮮からみた華夷思想》, 山川出版社, 東京, 2003

○Ⅱ－2－1)

《史料》

<清>

- ・《光緒會典》
- ・《籌辦夷務始末》 (全7冊), 國風出版社, 臺北, 1963
- ・《籌辦夷務始末》 (全14冊), 中華書局, 北京, 1964-79
- ・《籌辦夷務始末補遺》 (全9冊),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88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中國檔案出版社, 北京, 1998

<朝鮮>

- ・《院務撮要》
- ・《清選考》
- ・《勅使日記》, 《承政院日記》, 《日省錄》
- ・《憲宗實錄》, 《哲宗實錄》
- ・《通文館志》, 韓國珍書刊行會, 京城, 1907
- ・《同文彙考》 (全4冊), 國史編纂委員會, 果川, 1978

《研究》

(日本語)

- ・寺内威太郎 <李氏朝鮮と清朝との辺市について (一) (二)> 《駿臺史學》 58, 59, 駿臺史學會, 東京, 1983
- ・糟谷憲一 <近代的外交體制の創出－朝鮮の場合を中心に－> (《アジアの中の日本》,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92)
- ・原田環 《朝鮮の開國と近代化》, 溪水社, 廣島, 1997
- ・石橋崇雄 《大清帝國》, 講談社, 東京, 2000

(韓國語)

-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서울, 1977
- ・李哲成 《朝鮮後期對清貿易史研究》, 國學資料院, 서울, 2000

・柳承宙・李哲成 《朝鮮後期 中國과의 貿易史》，景仁文化社，서울，2002

（中國語）

・張存武 《清韓宗藩貿易 1637～1894》，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臺北，1978

○Ⅱ－2－2)

《史料》

＜越南＞

・《大南寔錄》，第13－18卷（正編第3部－正編第4部），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東京，1977-1980

《研究》

（日本語）

・坂野正高，《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大學出版會，東京，1973

・山本達郎 編，《ベトナム中國關係史》，山川出版社，東京，1975

・坪井善明，《近代ヴェトナム政治社會史》，東京大學出版會，東京，1991

・石井米雄・櫻井由躬雄 編，《新版世界各國史5 東南アジア史Ⅰ 大陸部》，山川出版社，東京，1999

○Ⅲ－1

《史料》

＜日本＞

・《日本外交文書》第1－18卷，1950-54

＜朝鮮＞

・《憲宗實錄》《哲宗實錄》《高宗實錄》

・《舊韓國外交文書》（全22冊），高麗大學校出版部，서울，1965-73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第4卷，高麗大學校出版部，서울，1973

・《同文彙考》（全4冊），國史編纂委員會，果川，1978

・（韓國）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舊韓末條約彙纂 上，中，下》，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서울，1964-65

＜清＞

・王彥威・王亮 編，《清季外交史料》（全7冊），文海出版社，臺北，1963

・《籌辦夷務始末》（全7冊），國風出版社，臺北，1963

・《籌辦夷務始末》（標點本，全14冊），中華書局，北京，1964-79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全2冊），文海出版社，臺北，197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室 編，《清季中日韓關係史料》（全11冊），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臺北，1972

・《籌辦夷務始末補遺》（全9冊），北京大學出版社，北京，198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中國檔案出版社，北京，1996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中國檔案出版社，北京，1998

- 《李鴻章全集》（全9冊），海南出版社，1997
- 田濤主 編，《清朝條約全集》（全3冊），黑龍江人民出版社，1999

《研究》

(日本語)

-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朝鮮總督府，京城，1940
- 渡辺勝美，《朝鮮開國外交史研究》，東光堂書店，京城，1941
- 申國柱，《近代朝鮮外交史研究》，有信堂，東京，1966
- 奥平武彦，《朝鮮開國交渉始末》，刀江書院，東京，1969
- 彭澤周，《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塙書房，東京，1969
- 金榮作，《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東京，1975
- 姜在彦，《朝鮮の開化思想》，岩波書店，東京，1980
- 石井孝，《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有隣堂，横浜，1982
- 秋月望，《朝中貿易交渉の経緯》（《東洋史論集》No.13，九州大學文學部，1984）
- 森山茂徳，《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東京，1987
- 高橋秀直，《日清戦争への道》，東京創元社，東京，1995
- 沈箕載，《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京都，1997
- 原田環，《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廣島，1997
- 安岡昭男，《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東京，1998
- 岸本美緒・宮嶋博史，《世界の歴史12 明清と李朝の時代》，中央公論社，東京，1998
- 尾形勇・岸本美緒 編，《中國史》，山川出版社，東京，1998
- 松丸道雄・池田溫・斯波義信・神田信夫・浜下武志 編，《世界歴史大系中國4 一明～清一》，山川出版社，東京，1999
- 武田幸男 編，《朝鮮史》，山川出版社，東京，2000
- 藤田雄二，《アジアにおける文明の對抗 攘夷論と守舊論に関する日本，朝鮮，中國の比較研究》，御茶の水書房，東京，2001
- 徐賢燮，《近代朝鮮の外交と國際法受容》，明石書店，東京，2001
- 安岡昭男，《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清水堂，大阪，2002
- 岡本隆司，《屬國と自主のあいだ》，名古屋大學出版會，名古屋，2004
- 金鳳珍，《東アジア <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九州大學出版會，福岡，2004

(韓國語)

- 朴日根，《近代韓美外交史》，博友社，서울，1968
- 金義煥，《朝鮮近代對日關係史研究》，景仁文化社，서울，1974
- 白鍾基，《近代韓日交渉史研究》，正音社，서울，1977
- 金源模，《近代韓美交渉史》，弘盛社，서울，1979
- 李光麟，《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서울，1979
- 白鍾基，《韓國近代史研究》，博英社，서울，1981
- 朴日根，《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一潮閣，서울，1981
- 朴忠錫，《韓國政治思想史》，三英社，서울，1982

-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 檀國大學出版, 서울, 1985
- 權錫奉,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一潮閣, 서울, 1986
- 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一潮閣, 서울, 1989
- 李完宰, 《初期開化思想研究》, 民族文化社, 서울, 1989
- 金容九, 《世界觀衝突의 國際政治學》, 나남出版, 서울, 1997
- 孫炯富, 《朴珪壽의 開化思想》, 一潮閣, 서울, 1997
- 韓哲昊, 《親美開化派研究》, 國學資料院, 서울, 1998
- 李光麟, 《全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서울, 1999
- 具仙姬, 《韓國近代對清政策史研究》, 혜안, 서울, 1999
- 李完宰, 《朴珪壽研究》, 集文堂, 서울, 1999
- 權赫秀,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 白山資料院, 서울, 2000
- 許東賢, 《近代韓日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서울, 2000
- 崔炳鈺, 《開化期の 軍事政策研究》, 景仁文化社, 서울, 2000
- 慎鏞廈, 《初期開化思想과 甲申政變》, 知識產業社, 서울, 2000
- 金容九, 《世界觀衝突과 韓末外交史 1866~1882》, 文學과知性社, 서울, 2001
- 李民植, 《近代韓美關係史》, 白山資料院, 서울, 2001
- 金世民, 《韓國近代史와 萬國公法》, 景仁文化社, 서울, 2002
- 張寅性, 《場所의 國際政治思想》,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2002
- 李陽子, 《朝鮮에서의 袁世凱》, 新知書院, 釜山, 2002
- 金源模, 《開化期韓美交涉關係史》, 檀國大學校出版部, 서울, 2003
-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編, 《開化期の 韓國과 世界的 相互理解》, 國學資料院, 서울, 2003
- 金容九, 《壬午軍亂과 甲申政變》, 圖書出版 원, 仁川, 2004
- 鄭容和, 《文明的 政治思想: 俞吉濬과 近代韓國》, 文學과知性社, 서울, 2004
-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編, 《開化期の 韓國과 世界的 相互交流》, 國學資料院, 서울, 2004
- 金明昊, 《初期韓美關係의 再照明: 서면號事件에서 辛未洋擾까지》, 歷史批評社, 서울, 2005

(中國語)

- 楊公素, 《晚清外交史》,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1
-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北京, 1991
- 楊昭全·韓俊光, 《中朝關係簡史》, 遼寧民族出版社, 瀋陽, 1992
- 吳福環, 《清季總理衙門研究》, 文津出版社, 臺北, 1995
- 王明星, 《韓國近代外交與中國 (1861-1910)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98
- 王如繪, 《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 人民出版社, 北京, 1999
- 白新良主 編, 《中朝關係史》, 世界知識出版社, 北京, 2002

- 中國史學會 主編, 《中法戰爭》 (全 7 冊), 新知識出版社, 上海, 1955
- 《大南寔錄》, 第13-18卷 (正編第 3 部-正編第 4 部),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77-1980
- 黃國安·肅德浩·楊立冰 編, 《近代中越關係史資料選編》 (全 3 冊), 廣西人民出版社, 南寧, 1988

《研究》

(日本語)

-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73
-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山川出版社, 東京, 1975
- 坪井善明, 《近代ヴェトナム政治社會史》,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91
- 石井米雄·櫻井由躬雄 編, 《新版世界各國史 5 東南アジア史 I 大陸部》, 山川出版社, 東京, 1999

(中國語)

- 邵循正, 《中法越南關係始末》, 河北教育出版社, 石家莊, 2000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華夷體制로 유지되었다. 중국은 무력과 문화의 힘으로 주변의 ‘오랑캐’를 억압하여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그 반대로 주변 국가들은 중국과의 事大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그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인접 약소국을 冊封이라는 형식(朝貢, 頒曆)을 통해 도전을 억제하고, 인접의 소국은 그 체제 안에서 內治와 外交는 자주적으로 행하였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서양의 침략 이후 변모되고, 새로운 만국공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로 개편되었다.

하라다 교수는 이 문제를 중국과 그 주변의 조선과 월남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1) 조선과 월남은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다. 종주국인 중국은 속국을 자국 주위에 배치하여 안정보장을 도모하고, 속국은 책봉체제에 참여하여 다른 주변국에 대해서나 또는 국내에서도 권위를 가져 안정보장을 기하였다. 이런 책봉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冊封, 頒曆, 朝貢, 華夷思想 등 네 가지였다. (2) 조선은 청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책봉체제 속에 편입되었고, 월남은 자진하여 조공을 행하여 안정보장을 확보하였다. 청국의 입장에서는 월남보다 조선이 훨씬 중요하였다. (3) 아편전쟁 이후 중국 중심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지만 조선은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존의 책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갑신정변에서 조공관계 폐지를 주장한 것도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한 것이었다. (4) 월남과 중국과의 책봉관계는 청불전쟁으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는 청일전쟁으로 붕괴되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도 근대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서양의 임팩트와 일본에 의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되고 근대적인 질서가 형성 되었다는 것이다.

서양 세력은 자신들의 국제질서 논리로 비서구사회를 포섭하고, 또한 그 논리에 따라 비서구사회를 식민지로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중국 중심의 중세적 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서구가 주도하는 근대적인 국제질서, 이른바 萬國公法的 질서가 확립되었다. 동아시아의 근대적 국제관계도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라다 교수의 논문의 전체적인 논지, 즉 중세적인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되어야 동아시아 국제관계도 근대화된다는 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하라다 교수의 거론하고 있는 전근대 동아시아 인식, 그리고 근대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논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중세적 국제질서는 서양의 근대적 국제질서와는 판이하여 서양 중심의 국제질서 논리와 그 용어로는 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거론하는 조선과 월남의 경우로 보더라도, 중국 주변의 나라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는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던 것과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하게 종주국과 속국이라는 말에만 집착하여 당시의 의미보다는 근대적인 국제관계에서 거론하는 ‘종속 관계’로 보고 있다. 심지어 조공관계를 ‘종주국과 조공국(부용국)’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도 이런 점을 이미 비판하였

다. 가령 유길준은 증공국(贈貢國)과 속국(屬國)을 구분하고, 조선은 증공국은 될지언정 속국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소중화를 고수하던 척사론자도 조공국과 부용국을 구분하고 있다.

둘째, 조선과 청과의 관계도 처음 胡亂 당시에 설정되었던 구조로 줄곧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줄곧 변화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시점에서는 월남에서도 그러하지만, 조선에서도 기존의 화이관을 비판하고,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신사 파견도 어디까지나 우위에 서서 유지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조선-일본이라는 위계질서 하에서 '사대교린'하였다. 문호개방 이후에도 조선은 미국 등의 서구 국가와도 근대적인 형태의 조약을 맺었고, 청국과의 관계도 '派使駐京'을 시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이래의 조공관계는 의례적인 것이고, 조선 스스로 독자적, 자주적 국가 경영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다. 속방이라는 것도 외교상의 명분이었을 뿐이었다. 속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오히려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침략 야심 때문이었다. 갑신정변에서의 청국 간섭 배제도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 하라다 교수의 지적처럼, 조선후기 이래 '줄곧 변하지 않고 있던 조공관계'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셋째, 조공, 속방, 독립 등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세력의 역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를 서로 지배하려고 경쟁하던 청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개항이후에도 의례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화이체제 유지를 생각했던 청국은 임오군란 이후에 전근대적 '종속 관계'를 근대적인 형태의 속국, 속방, 곧 식민지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조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종속관계를 처음부터 깨려고 하였다. 이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서도 천명되었고, 심지어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도 이용하였다. 한편 조선은 종래의 사대관계 속에서 나라의 자립과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서구와의 근대적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가운데 점차 자립, 자주를 추구하였다. 갑신정변에서 이를 첫 조항에 넣은 것도 이런 인식에서 가능하였다(청국과의 조공관계를 철폐하는 것을 당시에 '독립'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독립운동'이라고 부르는 하라다 교수의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의 국제관계의 근대화는 이런 구조 하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3국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근대화가 가지는 성격도 규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근대의 동아시아 질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종속관계가 대등한 萬國公法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분명 근대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라다 교수가 언급과 같이 청일전쟁으로 '청을 종주국으로 하는 책봉체제가 붕괴된 이후'라는 것도 옳은 지적일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근대적' 만국공법 체제는 열강의 약소국 침략을 보장하는 체제였다. 만국공법이라는 것을 내세워 침략을 숨기고,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어간 것이 근대적인 체제인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는 바로 이런 점을 밝혀내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본측은 의도는 이 조약(조일수호조규)으로 조선을 청의 책봉체제에서 독립시켜서 조선과의 사이에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조약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월남, 청, 조선이 중화라는 속박에서 약간 해방되어서 근대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은 청일전쟁에 의해 청을 종주국으로 하는 책봉체제가 붕괴된 이후"라고 하여, 마치 일본의 노력으로 동아시아에 근대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고 기술하여, 일본이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행한 조선, 아시아에 행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집필자 답변]

김도형씨의 비평은 다음 네가지이다.

- 1) 조선은 중국(청)에 대한 증공국(贈貢國)일지라도 속국은 아니다.
- 2)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는 조선 후기(즉, 소위 병자호란) 이후의 의례적인 것이며, ‘속방(屬邦)’이 문제가 된 것은 임오군란 이후의 청의 침략때문이다.
- 3) 조공, 속방, 독립 등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세력 간의 역학 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 4)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는 열강에 의한 약소국 식민지화였다.

1) 비평자(김도형씨)의 지적은 말하자면 조선은 중국(청)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 ① ‘서양의 논리와 용어’로는 ‘동아시아의 중세적 국제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
- ② 유길준이 조공국과 속국을 구분했고, 척사론자도 조공국과 부용국으로 구분했다.

먼저, ①에 대해. 비평자가 ②에서 거론한 유길준의 주장에 대해 나는 1979년에 언급한 바 있다 (줄지 《조선의 개국과 근대화》 溪水社, 廣島, 1997, 325-326쪽). 그의 이 주장은 《서유견문》(交詢社, 東京, 1895) <제3 편방국의 권리>(85-99쪽)에서 전개되고 있다. 참고로 《서유견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1866-70)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길준은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화파에 속하며, 그러한 입장에서 증공국과 속국을 구별하여 조선은 증공국이지만 속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공국과 속국을 구별할 때, 유길준은 근대 국제법에 의거하고 있다. 척사론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길준은 근대 국제법이라는 ‘서양논리’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그가 증공국과 속국을 구별할 때, 그 ‘증공국’과 ‘속국’은 한역(漢譯)된 근대 국제법의 용어이니, 한자어라 해도 ‘서양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①은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②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은 屬國, 번속국(藩屬國), 복속국(服屬國), 증공국(增貢國), 병번(屏藩), 번병(藩屏) 등 다양하게 표현되던 것을 근대 국제법 번역어에 재래의 한어를 용어에 맞췄기 때문에 본래는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것에 상이한 의미가 부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유길준이 한역된 근대 국제법에 의거해서 증공국(조공국)과 속국을 구분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본래부터 상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②는 증공국(조공국)과 속국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으로 상기 ①과 ②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비평자의 의견에는 의문이 남는다.

2) 비평자는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는 조선후기 (이른바 병자호란:1636) 이후 의례적인 것이었으며 조선의 독자적 국가경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평자는 청과의 관계에 있어 조선의 정교금령(국정)은 자주라 되어있던 것을 가지고 청과 조선의 관계가 의례적이었다고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줄고 I - 2 - 1) 에서 서술했듯이, 청과 조선의 관계의 특징은 이 관계가 청의 이익추구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란 점이다. 이 점은 월남이나 유구(琉球) 등의 다른 속국과 다르다. 조선은 청의 이해에 기초해 무력으로 복속되었고, 변경개시 등을 통해 청조의 고지(故地)인 만주의 공급기지가 되었다.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립당초부터 조공의례 이외에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국제환경이 변하지 않고 조선이 만주의 공급기지로서의 기능 등 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한 조선은 정교금령(國政)이 자주라는 원칙하에서 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았다. 이것이 청의 조선 지배였다. 그 때문에 청이 조선의 국정에 직접 간섭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가 실질적이었는지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들어서 국제환경이 변화되자, 구미, 그리고 메이지(明治)유신 후의 일본의 개국압력에 대해 조선은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해 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고, 청 또한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해 조선에 전략적으로 중시해 관여를 강화했다. 청은 조선의 국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국제환경 하에서는 조선의 정교금령을 조선의 자주에 맡겼지만, 국제환경이 변화해 조선의 국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조선 자신의 의존과도 맞물려 조선에 대한 관여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말하자면, 청과 조선의 관계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다. 그 때문에 조선은 청에 복속된 뒤 청과의 국경무역이나 청에 파견하는 공사(貢使)와 청으로부터의 칙사(勅使) 경비 등의 부담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다가, 1880년에 청이 《조선책략》을 통해 청과 조선의 관계 개편을 꾀했을 때, 조선은 이 기회를 이용해 1882년 청에 대해 ‘개시개편’ ‘파사주경(派使駐京)’을 제기하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을 통해 명백하듯이 청과 조선의 종주관계는 실질적인 것이며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평자는 속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오군란(1882) 이후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청의 지배가 강한 경우가 속방이라는 말인가.

3)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줄고에서도 한반도의 상황을 동아시아 국제환경 안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일국내의 상황과 국제환경을 동시에 복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역사 인식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비평자는 개화파에 의해 일어난 갑신정변을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으로 형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개화파로서 저명한 윤치호가 “開化黨有意於興新開舊，恒圖獨立” (“윤치호 일기” 고종21년 9월 19일 조) 라 기록했듯이, 개화파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한 정치당파로, 갑신정변 당시 내건 ‘갑신정강’의 제1항 “조공허례의행 폐지”는 그 면모가 생생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청의 무력에 의해 성립된 조공관계(종속관계)를 조선 측에서 폐지하려 하는 일은 당연히 청의 무력적 개입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청의 무력개입까지 초래하면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4)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 해당 관계국의 동향과 상호 관계를 넓은 시야에서 통일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국제학술협력을

진행시켜, 동아시아 각국과 그 국제관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비평자는 동아시아의 종속적인 국가관계가 대등한 만국공법체제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전환은 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체제가 청일전쟁으로 붕괴됨으로써 행해진다고 하는 필자의 말은 인정하면서도, 만국공법체제는 열강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보장하는 체제였으므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연구는 실로 이 점을 밝히는 일에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비평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연구는 강국에 의한 약소국 식민지화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만국공법은 비평자가 주장하듯이 강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면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아울러 상하관계적인 전근대의 국가관계를 해체하고 국가평등론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촉진하는 면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만국공법은 국가평등론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촉진과 강국의 논리에 의한 국제사회 지배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만국공법체제화)를 비평자가 말하듯 열강에 의한 약소국 식민지화에 한정시키는 것은 역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연구로서는 상기의 양 측면을 동일한 시야 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평자의 비판에는 의문을 느낀다.